



2026. 7. 28.(화)

보도시점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7. 28.(화)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 생계급여 선정기준 '26년 1인82만 556원, 4인207만 8,316원

→ '27년 1인87만 5,533원, 4인221만 7,563원 -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

< 요약본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의 종료되었다.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 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제안하였다.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하였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하였다.

* (상대적 빈곤율: '23년 14.9% → '24년 15.3%), (5분위 배율: '23년 5.72배 → '24년 5.78배)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천 원 ~ 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하였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 개편 배경 >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왔다.

이는 2020년 7월 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020년 약 142만 원에서 2026년 약 208만 원으로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이 크게 강화되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기초자료인 가금복 자료는 아직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가금복 자료도 3 ~ 5년 전의 과거값**이라는 시차가 존재한다.

* 통계 단절 없이 활용 가능한 가금복 중위소득은 '20 ~ '24년 5개년임

** '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 가능한 최신 가금복 중위소득은 '24년 값

< 개편 경과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TF를 운영하고,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주요 대안을 논의했으며, 제79차 회의에서는 소득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안과 빈곤 완화 및 국가 재정 여건 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정기전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정방식을 결정하였다.

< 산정방식 변경 >

새로운 산정 방식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주요 사회·경제 지표 등으로 참조 지표를 구체화하여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3년간 적용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를 제안하였다.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3년간('22~'24)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GDP)의 3년 평균치를 참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을 보정한 결과이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4인 가구 기준)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높은 수준의 인상을 지속해 최근 물가와 소득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6.70%

위원회는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확대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등 빈곤 심화·K자형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증가율을 결정하였다.

* (빈곤심화) 1분위(하위 20%) 가구 적자 규모 확대 ((25.4분기)43.8 → (26.1분기) 51.9만 원 가계동향조사)
1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 확대 ((25.4분기)58.7% → (26.1분기) 62.5% 가계동향조사)
* (양극화) 상위 20%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년 대비 가처분소득증가율 : (상위 20%) 5.1% VS (하위 20%) 1.9% (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 2천 원이 인상되어, 273만 6,042원으로,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43만 5천 원이 인상되어 692만 9,885원이 된다.

< 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27년	2,736,042	4,480,645	5,718,091
증가액 (27년-'26년)	171,804	281,353	359,055

③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2027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하였다.

< 2026년도 및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생계급여 (중위 32%)	'27년 87만 5,533	143만 3,806	182만 9,789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의료급여 (중위 40%)	'27년 109만 4,417	179만 2,258	228만 7,236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주거급여 (중위 48%)	'27년 131만 3,300	215만 710	274만 4,684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교육급여 (중위 50%)	'27년 136만 8,021	224만 323	285만 9,046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1인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인상이며,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으로 결정하였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으로 결정하였다.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천 원 ~ 5만 원 인상하였다.

< 2027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1인	38.1	(+1.2)	31.3	(+1.3)	25.9
2인	43.1	(+1.7)	35.2	(+1.7)	29.1
3인	51.4	(+2.2)	42.2	(+2.1)	34.7
4인	59.6	(+2.5)	48.8	(+2.5)	40.3
5인	61.8	(+2.7)	50.5	(+2.6)	41.8
6인	73.1	(+3.2)	59.9	(+3.1)	49.2

* 괄호는 '26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결정하였다.('26년 현행 수준 유지)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으로 결정하였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교는 '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25. 2.1%)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7년도 교육활동지원비 >

(단위 : 원)

구분		'25년	'26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 활동 지원비	초	487,000	502,000	+15,000 (+3.0%)
	중	679,000	699,000	+20,000 (+3.0%)
	고	768,000	860,000	+92,000 (+12.0%)
교과서비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 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라며,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 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 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4-202-3051)
		담당자	서기관	이웅재 (044-202-3066)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장	강 준 (044-202-3091)
		담당자	사무관	이예원 (044-202-3088)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장	조성태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윤현식 (044-201-3358)
<교육급여>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김미희 (044-203-6529)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
- 위촉직(10인):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정 은 경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김 이 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 은 옥	교육부 차관
		조 용 범	기획예산처 차관
		김 민 재	행정안전부 차관
		권 창 준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석 재 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태 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 현 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의료정책연구실장
		박 미 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공익	송 인 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
		김 도 형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조 상 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수 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현 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붙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5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외 기준 폐지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3.3조 원(본예산, 국비 기준)

* 생계 9.2조원, 의료 9.8조원, 주거 3.2조원, 교육 0.2조원, 자활 0.8조원, 해산장제 0.05조원

붙임 3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총 80개, 2026년 기준)

연번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이용권
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1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3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4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1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6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7	국토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8		(기초생활) 주거급여
19		행복주택 공급
20	농림부	청년월세 지원
21		학교우유급식
22		농식품바우처
23	산림청	양곡할인
24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5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26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27		통합문화이용권
28	법무부	스포츠강좌이용권
29		법률 구조 제도
30	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31		해산장제급여
32		긴급복지
33		장애수당(기초)
34		장애수당(차상위)
35		장애아동수당
36		차상위계층 지원(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등)
37		(기초생활) 의료급여
38		장애인연금
39		재난적 의료비 지원
4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41		자활근로
4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3		노인안전검진 및 개안수술

연번	부처	사업명
44		발달재활서비스
45		언어발달지원
46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4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4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0		치매 검진 지원
5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4		장애정도심사 검사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55		아동발달지원계좌
56		상병수당 시범사업
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8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0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62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3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6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양육비,교육비)
6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6		한부모가족아동 양육비 등 지원
6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
68		위기청소년특별지원
69	성평등부	아이돌봄 서비스
7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1		온가족보듬사업
72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7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7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7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6	금융위	청년미래적금
77		에너지바우처
78	산업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7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80	기후부	환경보건이용권